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05.6.16(목)10:00

#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 ①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 ②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③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 ④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⑤ 거창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 □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6.
- 라. 의안번호 : 제2005 - 32호

##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제정이유

○ 거창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군은 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군이 출연한 원금은 조성목표액이 달성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조성이전에는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장학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재단은 매년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매회계연도 2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5,6조)
- 군수는 필요시 운영상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 등이 발생할 경우 출연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조례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케 하고 거창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출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임.
- 동 장학재단의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수렴과 장학재단 법인명칭공모를 위하여 2005.5.16~2005.6.20까지 공고중에 있음.
- 공고한 사항의 사업개요를 보면, 향후 10년간(2014년까지) 100억원의 장학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조성재원은 군비 출연금, 기탁금, 후원금, 이자수익 등으로 운영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장학기금의 대부분이 군비 출연금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매년 10억원 정도의 군비 출연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안 제4조의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군이 출연한 원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초창기에는 소규모의 이자로 장학 지원사업을 해야 할 것이므로 사업효과 거양을 위해서는 일정비율에 범위내에서 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이나, 지원대상 장학재단의 명칭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향후 장학재단의 명칭이 제출된 조례안대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임.

## 4. 제정근거 및 참고자료

### ○ 지방재정법 제14조(寄附 또는 補助의 제한)

①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公共機關이 아닌 團體에 寄附·補助 또는 기타 公金の 支出을 할 수 없다.

1. 法律에 規定이 있는 경우
2. 國庫補助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國家가 지정한 경우
3. 用途를 지정한 寄附金에 의한 경우
4. 地方自治團體가 勸獎하는 事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가 勸獎하는 事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조(寄附 또는 補助의 제한)

① 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5.11.30>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1.30>

③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

## ②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6.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6. 8
- 라. 의안번호 : 제2005 - 33호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의 개정·시행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될 제증명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별표1]의 7.부동산에 관한 사항에 (6)개별주택가격 확인 요액과 (7)공동주택가격 확인 요액을 각각 1,000원으로 하고, 공시일자 별 추가분에 대하여 200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함.  
(안 별표1)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개정조례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설되는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2005.5.23 거창군 공고 제239호로 입법예고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요액을 1,000원으로 정한 것은 자체원가분석 결과 1,007원정도인 것을 감안 결정한 것으로 적정수준의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한 성격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요액이 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됨.

(집행부에서는 향후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 재검토 후 조정할 계획임)

## 5. 제정근거

- 地方自治法 제128조, 제130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

## 6. 참고자료

-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b>7.부동산에 관한 사항</b>			
(1) 개별공시지가 확인	1필지	500	동일필지당해년도 공시일자별추가분 200
(2)토지(임야)대장등본지가 병기발급	1필지	300	동일필지당해년도 공시일자별추가분 200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건(법 인)	30,000	
	1건(공인중개사)	20,000	
(4)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법 인)	5,000	
	1건(공인중개사)	3,000	
	1건(중 개 인)	3,000	
(5) 분사무소 설치 신고	1 건	20,000	

### ③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6.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6. 8
- 라. 의안번호 : 제2005 - 34호

#### 2. 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또는 건의 등의 업무를 담당할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거창군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골자

○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와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및 지역의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의하도록 함.(안 제2조)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조의3)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대표협의체의 위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함.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6조)

○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규정함(안 제8조)

○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거 “거창군 지역사회 협의체”와 “거창군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조례내용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나 거창군 인구와 재정규모, 관련기관·단체 등의 규모를 감안할 때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7조의 위원해촉을 군수의 위촉권한이 없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까지 해촉권한을 부여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므로 부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8조제3항의 각 협의체에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



정한 것은 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의 직원(일반 또는 일용직)을 둘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지역의료보건계획은 제3기 계획(2003~2006)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거창군 사회복지계획도 2003.12월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 용역하여 납품된 “거창복지21 사회복지계획”으로 대체 시행하고 있으므로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함.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경실련에서 조례제정시 반영해줄 것으로 요구하며 제시한 의견으로는

- 복지부 조례(안)에 대해 가감 없는 수용은 지양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를 구성
- 협의체에 참가하는 실무자와 조직에 인센티브 제공을 명기
- 대표협의체 회의 횟수를 명기
- 구성준비단을 조례사항으로 명기

## 4. 제정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3.7.30] [시행일:2005.7.31] 제7조의2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4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이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시행일:2005.7.31] 제1조의4

## ④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6.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6. 8
- 라. 의안번호 : 제2005 - 35호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기존의 공설일반묘지를 정비사업시행으로 공원묘지로 조성된 묘지에 대하여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공설공원묘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 사용권 소멸에 대한 일부내용을 신설과 법률제명의 띄어쓰기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공설일반묘지중 정비사업을 시행한 묘지를 공설공원묘지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별표1)  
-“거창가지”, “남상무촌”, “가북용암” 공설일반묘지를 공설공원묘지로 명칭변경
- 사용자의 신청에 의거 유골을 반환한 경우에 사용권이 소멸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개정조례안은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거 공설일반묘지를 2002~2004년까지 정비 사업 시행한 것에 대하여 공설공원묘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사용자의 신청에 의거 유골을 반환한 경우에 사용권이 소멸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5.4.28 거창군 공고 제195호로 입법예고한 것으로 절차상 또는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제정근거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第12條 (公設墓地 등의 設置) ①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公設墓地·公設火葬場 및 公設納骨施設을 設置·관리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 特性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設墓地·公設火葬場 및 公設納骨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과 공동으로 設置·관리할 수 있다.

③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 ○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2. “공설공원묘지”라 함은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구역을 정비한 묘지를 말한다.

3. “공설일반묘지”라 함은 과거에 설치한 공동묘지 형태의 당지조성을 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한다.

## 5] 거창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6.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6. 8
- 라. 의안번호 : 제2005 - 36호

### 2. 폐지이유

○ 동 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운영되던 것으로 2004.10.22부터 탁노소가 경로식당으로 기능이 전환되어 동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과 맞벌이부부 부양노인을 낫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9.9.11 거창군 조례 제1533호로 제정되어 운용되던 것으로 2004.10.22부터 탁노소가 경로식당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존치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기존 탁노소로 지정 운영한 곳은 거창읍과 가조지역 각 1개소였음.

○ 현재 거창군내 경로식당은 12개소가 운영중이나 거창읍과 가조지역은 월~금요일까지 운영(일 102명정도, 연간 2만명)되나 기타읍면은 경로당별 연간 16천여명 지원계획으로 55백만원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례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